

#### [서식 예] 답변서(약정금 청구에서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 항변)

# 답 변 서

사건번호 2000가소0000 약정금

원 고 ○○○

피 고 ◇◇◇

위 사건에 관하여 피고는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 청구취지에 대한 답변

-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 청구원인에 대한 답변

- 1. 원고는 2000.O.O. 피고 은행과 약정 기간을 1년으로 하는 정기예금 통장계좌 개설약정을 체결하였습니다.
- 2. 소외 □□□□는 원고의 예금통장을 무단으로 절취하여, 제1예금인출을 행한 이후, 1시간 이내 거래지점을 바꿔가면서 제2예금인출 및 제3예금인출에서도 제1예금인출과 같은 예금지급청구서를 작성하여 금원을 인출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소외 □□□은 이미 신고된 진정한 인감을 사용하였고, 비밀번호 역시 일치하였습니다.
- 3. 피고는 이미 해당 예금통장계좌의 예금인출액 상당액을 소외 □□□에게 지급하였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예금을 지급받을 권한이 없는 자인 소외 □□□에게



지급한 것은 무효이므로 원고에게 다시 제2예금인출 및 제3예금인출과 같은 금액 상당액의 예금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4. 그러나 민법 제490조는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는 변제자가 선의이며 과실없는 때에 한하여 효력이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우리 대법원은 "절취한 예금통장의 경우 인감 대조 및 비밀번호 확인 등의 통상적인 조사 외에 당해청구자의 신원을 확인하거나 전산 입력된 예금주의 연락처에 연결하여 예금주본인의 의사를 확인하는 등의 방법으로 그 청구자가 정당한 예금인출권한을 가지는지 여부를 조사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부담하는 것으로 보기 위해서는 그 예금의 지급을 구하는 청구자에게 정당한 변제수령권한이 없을 수 있다는의심을 가질 만한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6다44791 판결 참조).

5. 사안에서 피고가 제출받은 통장과 예금지급청구서에 아무런 하자가 없었고, 이미 신고된 진정한 인감이 사용되었으며, 철저한 보안이 요구되는 비밀번호까지 일치하였으므로 피고의 예금의 지급은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로서 유효합니다. 따라서 피고의 변제는 효력이 있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 증 방 법

1. 을 제1호증 인감대조 및 비밀번호 확인 내역

# 첨 부 서 류

1. 위 입증방법 1통

# ○○지방법원 ○○지원 제○민사단독 귀중



제출법원	본안소송 계속법원
제출부수	답변서 1부 및 상대방 수만큼의 부본 제출
답변서의 제 출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경우에는 소장의 부본을 송달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함. 다만, 피고가 공시송달의 방법에 따라 소장의 부본을 송달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아니함(민사소송법 제256조 제1항). 법원은 피고가 민사소송법 제256조 제1항의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음. 다만, 직권으로 조사할 사항이 있거나 판결이 선고되기까지 피고가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상고심에서 피상고인은 상고인의 상고이유서를 송달 받은 날부터 10일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음(민사소송법 제428조 제2항).
의 의	답변서는 피고나 피상소인이 본안의 신청에 대한 답변하려는 사항을 기재하여 최초로 제출하는 서면을 말함(민사소송법 제148조, 제428조, 제430조).
기 타	답변서는 소장의 청구취지에 대한 답변과 청구원인에 대한 답변으로 구성하는데, ·청구취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취지로 작성 ·청구원인: 원고의 청구원인을 면밀히 분석하여 인정할 부분과 부인할 부분을 구분, 부인할 부분에 대하여 이유를 밝히고, 인정할 부분에 대하여도 항변사유가 있으면 항변과 동시에 이유를 밝혀야 함. ·당사자가 공시송달에 의하지 아니한 적법한 소환을 받고도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답변서 기타 준비서면마저 제출하지 아니하여 상대방이주장한 사실을 명백히 다투지 아니한 때에는 그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그 결과 의제자백(자백간주)된 피고들과 원고의 주장을 다툰 피고들 사이에서 동일한 실체관계에 대하여서로 배치되는 내용의 판단이 내려진다고 하더라도 이를 위법하다고 할 수 없음(대법원 1997. 2. 28. 선고 96다53789 판결). ·응소관할이 생기려면 피고의 본안에 관한 변론이나 준비절차에서의 진술은 현실적인 것이어야 하므로 피고의 불출석에 의하여답변서 등이 법률상 진술 간주되는 경우는 이에 포함되지 아니함(대법원 1980. 9. 26.자용이막403 결정). ·원고의 청구원인사실에 대한 주장을 부인하는 취지의 피고의 답변서가 진술되거나 진술 간주된 바 없으나 동답변서가 제출된 점으로 미루어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여 원고의 청구를 다툰 것으로 볼 것임(대법원 1981. 7. 7. 선고 80다1424 판결).